

No. 63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연방 재난지역 선포 카운티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SANDY에 따른 일부 상황을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 공해라고 선포하고 이들 상황의 제거를 명령

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2012년 10월 2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9일부터 이후까지 허리케인 Sandy는 매서운 바람과 억수 같은 비를 뿌려 뉴욕주 전역에 기록적인 홍수와 엄청난 폭풍 해일을 일으키며 뉴욕주를 휩쓸어버렸습니다;

허리케인 Sandy가 몰고온 홍수와 폭풍해일은 Bronx, Kings, Nassau, New York,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Westchester와 같은 연방 재난 선포 지역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이들 지역의 보안과 주민들의 생활 및 삶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져올 상황을 야기시켰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연방 재난 선포 지역에 두 번째로 강력한 폭풍이 곧 발생하여 기존에 발생했던 쓰레기 및 이와 관련된 상황들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중보건법 제13조 1301항에 따라, 뉴욕 보건청장은 연방 재난 선포 지역 카운티에서 허리케인 Sandy로 발생된 상황을 둘러본 후 이들 상황을 공적 공해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나, ANDREW M. CUOMO 뉴욕주지사는 공중보건법 제13조 1301항에 따라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허리케인 Sandy로 야기된 상황을 공적 공해라 선포하고 관련 지역 공무원들에게 이 쓰레기들을 즉시 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2012년 11월 5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